

임실군의회 공고 2024 - 5호

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. 1. 16.

임실군의회의장



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 안 이 유

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 요 내 용

- 가. 목적, 정의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~ 안 제2조)
- 나. 모유수유실 등 설치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모유수유 홍보와 교육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- 라.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)

3. 참 고 자 료

- 가. 관련법령 : 『모자보건법』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등 : 집행부 의견조회

라. 입법예고 : 2024. 1. 16. ~ 1. 22.(6일간)

마. 기 타

1) 제정 조례안

2)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2. “영유아”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.
3. “모유수유실”이란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모유수유실 등 설치) ①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·운영하도록 권장하고,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

1. 임실군 본청 및 산하기관
2.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
3.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
4. 우체국, 도서관 등 공공건물
5. 기차역,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

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모유수유 홍보 등)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실천·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지원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『모자보건법』

제10조의3(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·홍보·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,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